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159
--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6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24일
3. 상정일자

-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(2017년 11월 6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정병익)

1. 제안이유

-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설립 요구
- 교육공간기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공간 개선사업과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연계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
- 사회·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디자인혁신 추진체계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무를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명시(안 제9조).
- 나.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존속기간을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2년으로 정함(안 부칙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159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(가칭)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설치

-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9호는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로 ‘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항’을 신설하여 현재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통합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특히 ‘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’(교육부, 2016.7.5)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각 시·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

역 내 효율적인 학교설립과 기존 학교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또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지역 중심의 인구의 수평이동 등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규모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.

이에 대해 교육부도(지방교육자치과-3852, 2017.8.23) 전담부서 구성을 위한 4급 정원을 승인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전담부서는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¹⁾ 따른 한시기구인바 기존 교육행정국의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명확한 사무 분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

한시기구 존속기간(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, 2년)의 범위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1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생략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제9조제9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교육행정국)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 <신 설></u></p>	<p>제9조(교육행정국)</p> <p>.....</p> <p>1.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·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